## 국가평생교육진흥원·대구대학교 2주기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(LiFE 2.0) 협약서

■ 사 업 명 : 2주기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(LiFE 2.0)

- 유형명 : 1유형(평생교육체제 구축형)

■ 사업기간 : 2023년 8월 30일 ~ 2025년 5월 31일

- 1차연도 협약기간 : 2023년 8월 30일 ~ 2024년 5월 31일

■ 1차연도 (임시)사업비(협약액) : 금일십억칠천사백오십팔만이천원(금1,074,582,000원)

■ 협약당사자 : 국가평생교육진홍원장, 대구대학교총장

「2주기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(LiFE 2.0)」(이하 '사업')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과 대구대학교총장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- 제1조 (목적) 본 협약의 목적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(이하 '진흥원장'), 대구대학교총장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제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.
- 제2조 (협약기간) ① 협약기간은 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협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2025년 사업이 종료된 날까지로 하되, 2023년 사업 기간은 2024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. 단, 사후관리는 사업 종료 후 4년간 시행한다.
  - ② 연차평가 및 성과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협약이 해지되지 않은 경우에는 협약 국고지원금을 제외한 기존 협약사항이 동일한 것으로 본다.

- 제3조 (사업의 수행) ① 대구대학교총장은 「2주기 대학의 평생교육체 제 지원사업(LiFE 2.0) 사업 관리 운영 매뉴얼」(이하 '운영매뉴얼')과 본 협약서의 각 조항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,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.
  - 1. 대구대학교(이하 '대학')는 협약서,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성 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를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.
  - 2. 대학은 협약기간 동안 사업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투명하게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한다.
  - 3. 대학은 운영매뉴얼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갖고 사업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.
  - 4. 본 사업 관련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또는 부속기관 연계 운영에 있어서 부정비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 하여야 한다.
- 제4조 (전담행정조직 구성·운영) 대학은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대학에 전담조직을 신설 또는 기존 조직을 전환하여 전담조직을 구성·운영하며, 이의 운영에 대해서는 자체 규정을 제정, 준수하여 한다.
- 제5조 (사업비 지원 및 관리) ① 국가평생교육진흥원(이하 '진흥원')은 대학에게 협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사업비로 지급한다. 사업비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진흥원이 정한 바에 따른다. 단, 2023년 사업비 집행 기간은 사업협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.

- ② 대학은 사업비에 대하여 별도로 회계 처리하고 증빙서류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
- ③ 대학이 사업 추진 중에 일부 사업을 중단·폐지하거나, 자체 사정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 중단 또는 폐지 시점을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은 국고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.
- ④ 진흥원은 사업 수행 중 대학이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거나, 교부액 잔액을 지급하지 않는다.
- ⑤ 대학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업성과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진흥원은 사업관리위원회를 소집하고 교육부와 함께 현장점검 등을 통해 안건을 상정하여 환수조치 등을 결정하고,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.
- 제6조 (사업수행 및 사업완료) ① 대학은 협약서, 운영매뉴얼 및 사업 계획서의 내용과 일정에 의거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.
  - ② 대학은 사업 종료 후 결과보고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
  - ③ 진흥원은 사업계획서와 결과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·검토하여 사업완료 여부를 결정한다.
- 제7조 (관련 자료 제출 등) 대학은 교육부 및 진흥원의 사업과 관련된 자료, 현장 확인 및 서류열람 등의 요청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
- 제8조 (협약의 변경) ① 진흥원은 대학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 상호 동의하에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, 그 서면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, 변경된 사항은 그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.

- 제9조 (협약의 해지)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, 사안에 따라 협약을 즉시 해지하거나, 대학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최고하고, 그 기간이 경과하도록 시정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에는 협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.
  - 1. 대학이 사업 수행을 포기한 경우
  - 2. 대학이 주요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
  - 3. 대학이 허위 공시정보 및 자료 제출, 청탁, 외부 압력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었음이 판명된 경우
  - 4. 사업비 유용·횡령 또는 부정·비리 발생 등 사업의 추진과정에 서 대학의 중대한 법령 위반이 판명된 경우
  - 5. 사업계획서에서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비 집행 또는 기타 본 사업과 무관한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
  - 6. 교육부 또는 진흥원의 시정·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학이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, 불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여 계속적인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  - 7. 그 밖에 사업의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중대한 상황 변화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
  - ② 진흥원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사업비 지원을 중단하고, 대학으로부터 국고지원금(발생이자 포함)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며 귀책사유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  - ③ 제1항의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진흥원은 대학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며,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 대상 제외 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.

- 제10조 (사업비의 정산) ① 진흥원은 사업목표 달성 및 사업기간 종료 시 대학이 사용한 사업비를 정산한다.
  - ② 진흥원과 대학이 정한 해지사유 등으로 본 협약을 해지하는 경우, 대학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하고, 지원받은 국고지원금(발생이자 포함)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한다.
- 제11조 (사업성과물의 활용) 사업성과의 간행물 게재, 홍보 및 전시회 출품 등 대외 발표 시에는 진흥원과 대학의 협의로 결정하고, 진흥원 지원사업에 의한 결과물임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.
- 제12조 (개인정보보호) ① 양 당사자는 본 사업운영, 홍보, 학습 데이터 분석 등에 있어 '개인정보보호법'을 준수한다.
  - ② 대학은 진흥원에게 '개인정보보호법'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대학 학습자 정보 및 학습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.
  - ③ 양 당사자는 본 사업 참여 학습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13조 (관계법령의 준수) ① 대학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진흥원의 운영매뉴얼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- ② 본 협약기간 중 관계법령과 진흥원의 운영매뉴얼이 변경되는 경우 대학은 변경된 법령과 운영매뉴얼에 따라야 한다.
- 제14조 (해석) 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협약 내용에 대한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는 진흥원의 해석에 따른다.

제15조 (협약의 효력) 본 협약서는 진흥원, 대학이 각 1부씩 보관하고,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당사자 간에 서명·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.

## 2023년 8월 30일

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강 대 중



대구대학교총장 박 순 진

